

가 축 분 뇨 의 관 리 및 이 용 에 관 한
법 률 시 행 규 칙 일 부 개 정 령 안

2025. 10.



1. 개정이유

충분한 저위발열량 확보가 어려워 실제 생산이 저조했던 ‘가축분뇨 고체연료화’ 활성화를 위해 고체연료 성분기준 등의 규제 합리화와 배출시설 설치 인·허가 관련 규정 정비

2. 주요내용

가.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변경허가 관련 사항 정비(제5조제1항)

- 1)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만드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로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중요 변경사항을 규정함

나.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 관련 사항 정비(제7조제1항)

- 1)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만드는 시설 설치 신고 시 ‘설치 및 운영계획’을 제출토록하여 기준에 적합한 고체연료 생산이 가능한지 검토할 수 있도록 함
- 2)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만드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로서 변경신고를 받아야 하는 중요 변경사항을 규정함

다.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 관련 사항 정비(제30조제1항)

- 1)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생산하여 판매하려는 가축분뇨관련영업자가 허가를 받을 때 ‘설치 및 운영계획’을 제출토록하여 기준에 적합한 고체연료 생산이 가능한지 등을 증명할 수 있도록함

라. 가축분뇨 고체연료 생산시설 설치기준 보완 등(안 별표2)

- 1) 미비했던 가축분뇨 고체연료 생산시설 설치기준을 보완하고자 함

마.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성분기준 합리화 등(안 별표4의2)

- 1) 가축분뇨 고체연료는 성분기준 준수가 어려워 그간 생산이 저조했으므로 성분기준을 합리화하여 ‘가축분뇨 고체연료’ 생산을 활성화하여 가축분뇨 처리방식을 전환하고자 함

바.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생산시설 관리기준 보완 등(안 별표6)

- 1) 미비했던 가축분뇨 고체연료 생산시설 관리기준을 보완하고자 함
- 사. 가축분뇨관련영업 허가신청서 서식 보완 등(안 별지 제15호 서식)

- 1) 고체연료를 생산하여 판매하려는 영업자의 허가 신청 시 필요한 첨부서류를 기재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만드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로서 시행규칙 [별표 4의2]에 따른 시설의 설치 및 운영계획의 중요한 부분이 변경되는 경우

제7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가축분뇨 처리시설로 고체연료를 만드는 시설을 설치할 경우 시행규칙 [별표 4의2]에 따른 시설설치 및 운영계획 등

제7조제2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만드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로서 시행규칙 [별표 4의2]에 따른 시설의 설치 및 운영계획의 중요한 부분이 변경되는 경우

제30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가축분뇨 처리시설로 고체연료를 만드는 시설을 설치할 경우 시행

규칙 [별표 4의2]에 따른 시설설치 및 운영계획 등

별표 2 제5호다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성형 시설 또는 가공시설”을 “가공시설”로 하며, 같은 호 사목을 자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사목 및 아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반출하기 전까지 시행규칙 별표4의2의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성분 등에 관한 기준에 부합하는 품질을
유지시킬 수 있는 저장시설을 설치할 것

사. 고체연료 생산 시 발생하는 잔재물은 가축분뇨 고체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거나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기준과 방법에 따
라 처리하여야 한다.

아. 고체연료제품의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및 수질
오염물질 등을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 등 관
련 법령에 따른 기준 이내로 처리할 수 있을 것

별표 4의2 원료비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4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원료비	단일연료	%	가축분뇨 100%
	혼합연료		가축분뇨 60% 이상, 보조원료 40% 미만

별표 4의2 비고 제1호~제2호는 삭제하고, 제3호는 제7호로 한다.

별표 4의2 비고 제1호~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가축분뇨 고체연료는 성형하지 않은 형태로 생산할 수 있다. 다만, 생산·저장·이송·사용 시에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고 폭발 등 안전상 위험의 우려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가축분뇨 고체연료는 가축분뇨만을 원료로 제조하는 것(이하, 단일연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축분뇨에 보조원료를 섞어 생산하는 고체연료(이하, 혼합연료)도 가축분뇨 고체연료로 인정할 수 있다.
 - 가. 가축분뇨 배출·처리시설 설치 및 가축분뇨처리업 허가 등에 따라 보조원료 및 원료비에 대한 적정성을 인정받은 경우
 - 나. 혼합연료를 생산·사용함에 따른 환경적 위해 우려가 없을 것
 - 다.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품질향상을 목적으로 할 것
3. 제2호 단서에 따라 혼합할 수 있는 보조원료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의3에 따라 가축분뇨 고체연료로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가. 농작물의 부산물(콩대, 옥수수대, 왕겨 등)
 - 나. 커피찌꺼기
 - 다. 초본류
 - 라. 톱밥
 - 마.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의3에 따른 51-20-99 그 밖의 폐목재류(「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추진으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에 한정한다)
4. 다음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저위발열량을 2,000kcal/kg이상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고체연료 생산 전에

제출하여 허가 사항에 반영하여야 한다.

가. 단일연료를 생산하는 경우

나. 저위발열량 3,000kcal/kg미만 연료에 대한 수요처 요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다. 가축분뇨 배출·처리시설 설치 및 가축분뇨 처리업 허가 등 신청 시 가목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등 서류를 제출할 것

5. 가축분뇨 고체연료 생산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목의 계획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형태 및 규격, 성분, 생산량 등 생산 계획

나. 재 등 잔재물의 예측발생량과 처리방법 내역서

다.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사용시설 확보 명세서 및 공급계획서

라. 사용시설로의 운반 방법 및 반출 전까지의 보관방안

마. 혼합연료를 생산하는 경우 보조원료 투입 계획

바. 고체연료의 제조·보관·공급·처리과정에서의 환경오염 방지대책

6. 가축분뇨 고체연료 생산시설을 설치·운영계획의 중요한 변경사항은 아래와 같다.

가.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사용시설을 변경

나. 가축분뇨 고체연료 중 혼합연료를 생산하는 시설에서 보조원료 및 원료비를 변경

다. 저위발열량 2,000cal/kg이상의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생산하는 경우

별표 6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로 하고, 같은 표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제11호(종전의 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찌꺼기”를 “찌꺼기·잔재물”로, “오니는”을 “오니 등은”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탈수하거나 퇴비화하여 처리하는 방

법”을 “처리”로 한다.

9.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만드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다음 각 목을 준수하여 관리할 것

가. 고체연료로 만드는 가축분뇨 또는 퇴비에 대해서도 별지 제22호 서식의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 관리대장에 처리방식과 사용량을 기록

나. 시행규칙 별표4의2에 따른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성분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생산된 고체연료를 공급하기 전까지 적정한 저장시설에 보관·관리할 것

다. 고체연료 생산·보관·운반 시 악취나 침출수가 발생하거나 먼지 등이 흩날리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할 것

라. 고체연료는 사용시설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수요와 공급이 균형이 되도록 생산하여 과잉생산 및 보관에 따른 환경적 영향이 없도록 할 것

별지 제1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